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폐기물처리업자의 의제처리 적용 대상에 시설
사용신고 추가〉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492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폐기물처리업자의 의제처리 적용 대상에 시설 사용신고 추가	3

I. 제안경위

2026년 2월 2일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지사의 적합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구조·공정·안전성 등이 이미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확인된 경우,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 행정절차의 중복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후 해당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처리시설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사용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이미 인허가 단계에서 검토·확인된 사항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사용 개시 행위

에 대해서도 두 행정청에 각각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인허가 단계에서는 의제 규정이 적용되면서도 시설 사용신고 단계에서는 의제가 적용되지 않아 행정절차가 이원화되는 구조적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폐기물의 처리 기준이나 관리·감독 수준을 강화하는 효과 없이 단순히 행정 절차만 반복하게 하는 비효율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의제 대상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사용신고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중앙행정기관의 인허가를 거친 동일 시설에 대하여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반복 신고하도록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 25조).

Ⅲ. 검토의견

1. 폐기물처리업자의 의제처리 적용 대상에 시설 사용신고 추가

개정안은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경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처리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4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112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12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⑬ (생략)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 ⑬ (현행과 같음)
⑭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 또는 적합성확인을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u>변경 신고</u> 를 한 것으로 본다.	⑭ ----- ----- ----- ----- ----- ----- ----- ----- <u>신고 또는 변경 신고</u>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제29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

현행	개정안
⑮ ~ ⑰ (생략)	<u>경부장관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경우</u> ⑮ ~ ⑰ (현행과 같음)

현행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통보를 시작으로 관련 인·허가(통합환경허가, 건축허가 등) 및 시설 설치, 본 허가, 시설 사용신고 순의 단계적 절차¹⁾를 거치는데,

지정폐기물²⁾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적합통보, 본 허가, 시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④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설치공사를 끝낸 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관청
2. 제1호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29조제2항에 따른 승인관청 또는 신고관청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설 사용신고를 관할하고 있음.

법률 제2112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시행 2026. 11. 12.) 제25조제14항3)에 따르면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① 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②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③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④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에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서도 각각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 또는 적합성확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함.

이에 사업자는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친 경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만 제출하게 됨.

그런데, 시설 사용신고는 이와 같은 의제가 적용되지 않아 행정절차가 이원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제처리 대상에 시설 사용신고를 추가하려는 것임.

3) 법률 제2112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시행 2026. 11. 12.)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⑭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변경허가 또는 적합성확인을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4. 제25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본 허가’ 단계에서 이미 해당 시설의 구조, 처리 공정, 안전성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동일한 시설에 대해 허가 시 검증된 사항을 ‘사용신고’ 단계에서 관할 관청별로 중복하여 신고하게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이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다만, 법률 제2112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시행 2026. 11. 12.) 제25조제15항 및 제16항⁴⁾은 의제 신청 시의 서류제출 방법과 관계 기관 간 협의·통보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절차가 규정되지 아니한바, 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함께 정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련 단체(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이원화된 신고 절차를 효율적·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8

4) 법률 제21129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시행 2026. 11. 12.)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⑮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14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적합성확인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변경허가 신청, 변경신고 또는 적합성확인 신청을 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⑯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적합통보·허가·변경허가·적합성확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으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